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사항(제4조, 제6조)
 - 주차장·야영장·오토캠프장·숲속의집 사용료 (별표1)
 -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예약가능(예약후 3일 이내 사용료 납부)
 - 비수기(매년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시설사용료 30% 할인(숲속의집사용료)
 - 숲속의집 및 오토캠프장의 사용자 ⇒ 주차료 면제.
-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제7조)
 - 사용예정일 당일 내지 5일전 예약 취소한 경우 ⇒ 일부 또는 전액환급
 - 휴양시설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 환급 ⇒ 30% 공제후 반환
 - 기상재해 등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부과없음
-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에 따른 배상(제8조)
 - 사용예정일 당일 내지 5일전에 통보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및 일부 배상
 - 예약취소·잘못 입금한 자에게 5일 이내 환불
- 입장·시설사용·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 제11조)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제13조)

3. 참고사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동법 제22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 :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금 :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현금,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시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시설사용료 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숲속의 집 사용료는 비수기(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30%할인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숲속의 집 이용은 사전예약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

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⑤숲속의 집 이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1. 숲속의 집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3:00까지로 한다.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3:00부터 익일 13:00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당일 08:00부터 19:00까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5조(요금 징수 및 게시) ①시설사용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②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숲속의 집 및 오토캠프장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 처리) ①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 환급
3. 사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80% 환급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 사용한 경우 사용료의 70% 환급

②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배상
2.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4.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

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4.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 야생동·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 각종 행상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6.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등 산에 불을 놓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등) ①사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 관리·운영) ①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 주차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고
승용, 승합, 화물	1대/1회	2,000	
승합(25인승이상), 화물(2톤이상)	1대/1회	4,000	

□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고
야 영 장	1동/1일	3,000	
야 영 데 크	1동/1일	6,000	
오 토 캠 프 장	1개소/1일	7,000	주차료 면제

□ 숲속의 집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모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수 기	비 고
숲속의 집	26.44㎡(황토)	1동/1일	70,000	49,000	주차료 면제
	39.66㎡(황토)	1동/1일	90,000	63,000	
	46.27㎡(황토)	1동/1일	110,000	77,000	
※ 비수기(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30% 할인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